현시기 지적재산의 가치평가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안 철 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학부문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을 우리 식으로 연구완성하는 문제, 나라의 지식자원을 최대로 확보하고 리용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강 국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대담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과학기술이 사회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는 지식경제시대에는 지식자원을 최대로 확보하고 적극 리용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지식자원을 최대로 확보하고 리용하는 문제는 지적재산의 창조와 그 도입리용, 류통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지식자원의 확보와 리용은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필요로 한다.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것은 지적창조활동에 대한 해당 단위들의 관심을 높여주고 지적제품창조량을 증대시키며 지적제품들의 류통과 보급을 원활하게 하 는데서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특히 대외경제거래에서 지적창조물의 상업적류통이 확대 되고있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가치평가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이 글에서는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문제를 기술무역과 같은 대외경제거래를 위한 가치평가문제로 국한시켜 해명하려고 한다.

오늘 지적재산의 가치를 바로 평가하는 문제는 실천적으로 매우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로 되고있다. 그것은 첨단기술제품과 같은 지적재산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지적재산으로 되는 해당 지적창조물의 창조에 지출된 비용크기에 대한 단순한 계산평가가 아니라 그 지적창조물의 기술적 및 경제적효과성에 대한 계산평가로 되기때문이다.

지적재산의 가치를 바로 평가하는 문제는 지적재산의 가치를 무엇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가치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하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문제에서 제기되는 중심적문제는 지적재산의 가치평가기초와 가치계산방법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현시기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평가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지적재산의 가치를 무엇에 기초하여 평가하겠는가에 대하여 정확히 밝히는것이다.

지적재산의 가치를 무엇에 기초하여 평가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옳바로 해명하자면 지적재산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는 문제가 선차적으로 나선다.

우선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여야 한다.

지적재산은 일정한 활동에 리용되며 소유가 구분된 지적창조물이다. 지적재산은 존재에서 무형적이다. 지적재산에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기술비결, 프로그람 등과 같은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의 대상, 기타 지적성과물들이 속한다. 지적재산으로 되는 공업소유권이나 저작권의 대상들을 비롯한 모든 지적창조물은 일정한 활동에 도입리용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된것이며 그 도입리용의 현실적의의가 있고 또 그 도입리용으로 하여 얻게 되는

일정한 크기의 경제적수입이 있으며 소유에서 명백한 구분이 있는것으로 하여 재산으로 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기업체가 소유하고있는 재산을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으로 구분하고 무형재산을 지적재산으로 정의하고있다. 실례로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지적재산의 개념을 기업의 재산관리적측면에서 정의하고 그 특성과 구성요소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이 나라에서 출판한 도서 《직급별재무관리수첩》에서는 《무형재산이란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실물형태가 없는 재산을 말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소유하고있으며 동시에 법률적인 승인을 받고 권리를 보호받는데서 표현된다. …무형재산은 고정재산 등 유형재산에 비해볼 때 아래와 같은 4가지 특징이 있다. ① 물질적실체가 없고 특수한 권리와 기술지식 등 경제자원형태로 존재한다. ② 기업이 유상으로 얻은것이다. ③비교적 긴 기간내에 기업에 경제적효과와 리익을 제공한다. ④ 그것들이 제공할수 있는미래의 경제적효과와 리익은 대단히 큰 불확정성을 가진다. 기업의 무형재산에는 주로 상표권, 전용기술, 기업상표, 봉사신용과 명예, 기업문화 등이 포함된다. 총체적으로 기업생산경영과 관련되여있으며 기업에 경제적효과와 리익을 가져올수 있는 물질적실체를 구비하지 않은 모든 재산은 다 무형재산에 속한다.》라고 해설하고있다.

지적재산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는 원리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볼 때 일정한 모순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지적재산의 개념을 장기적인 리용기간과 법률적인 승인이라는 관계에서 정의하고 모든 종류의 지적재산이 다 일정한 상업적교환관계를 통해 마련되는것으로 해설하고있는것이다. 특히 지적재산의 구성요소에 봉사신용과 명예까지도 포함시키고있는 것이다. 만일 지적재산의 개념과 특징, 구성요소를 이와 같이 정의한다면 지적재산의 본질적의미가 변화되여 지적재산의 창조와 관리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게 된다.

지적재산은 사람들의 지적창조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며 류통은 그다음에 있게 된다. 지적재산은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분야의 활동에도 리용되게 되며 법적보호를 받기 위한 신청등록을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지적재산도 적지 않다. 특히 지적재산은 존재적측면에서 실체가 없는 무형이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느낌에 의하여 형성되는 심리적결과물은 더우기 아니다. 일부 나라들에서 지적재산에 대한 견해에서 이와 같은 모순점이 발생하는것은 자본주의시장경제학적인 사고관점에 기초하고 있기때문이다.

지적재산은 일정한 활동에 리용되며 소유가 구분된 지적창조물이라고 개념화되여야 하며 그 구성요소는 공업소유권과 저작권, 기타 기술적성과물, 그것이 물화된 유형재들이 라고 할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여야 한다.

교과서 《주체정치경제학》(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5년)에서는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지출된 사회적로동에 의하여 규정된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상품 생산자가 들인 로동이 상품의 가치로 된다. 상품을 생산하는데 로동력과 생산수단이 소비되며 이 과정에 상품의 가치가 형성된다. 그리하여 상품의 가치는 소모된 생산수단(과거로동)으로부터 이전된 가치와 사람의 산로동에 의하여 새로 창조된 가치로 구성된다. … 상품의 본질적속성은 그 상품생산에 지출된 상품생산자들의 사회적로동이 가치로 된다는데 있다. 상품가치의 크기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들인 로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며 로동

량은 로동시간으로 측정된다.》라고 해설하고있다. 《현대경제사전 1》(사회과학출판사 2010년)에서는 《가치─상품에 들어있는 상품생산자들의 사회적로동. 가치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상품생산자가 들인 로동이다. 가치는 상품생산자들의 로동이 그 생산에서 표현되는 형태이다. 상품생산자들의 로동은 구체적로동인 동시에 추상적로동이다. 상품생산자들의 로동은 구체적로동인 동시에 추상적로동이다. 상품생산자들의 로동은 구체적형태를 무시하면 언제나 사람들의 일정한 육체적 및 정신적힘을 지출하는 활동으로 된다. 상품에 체화된 사람들의 이러한 로동이 그 상품의 가치를 이룬다.》라고 가치개념을 정의하고 내용을 해설하고있다.

《주체정치경제학》과 《현대경제사전 1》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가치는 해당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들인 생산자들의 사회적로동이다.

앞에서 정의한 지적재산에 대한 개념과 가치에 대한 개념에 기초하여 지적재산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수 있다.

지적재산의 가치는 그것을 창조하기 위해 들인 발명자의 사회적로동이다.

그러나 지적재산의 가치에 대한 리해에서는 지적재산의 가치가 일반상품의 가치와 다른것처럼 인식할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 하나는 지적창조물이 일반상품과 다른 생산적 특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발명자의 로동을 사회의 평균적인 생산적조건하에서 반드 시 지출이 되는 사회적로동으로 볼수 있는가 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명자가 해당 지 적창조물을 창조하기 위해 지출한 로동량의 크기를 로동시간의 길이로 측정하기 어렵다 는것이다.

발명자의 로동은 반드시 해당 시기 과학기술과 경제적측면에서의 사회발전수준을 반영하게 된다. 지적창조물을 창조하기 위한 발명자의 로동은 해당 시기 과학기술발전수준과 경제발전수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결과지어진다. 그러므로 해당 지적창조물의 창조에 들인 발명자의 로동은 사회의 평균적조건에서 지출되는 사회적로동으로 될뿐만아니라지적재산의 가치로 되는 사회적로동으로 되는것이다.

발명자가 해당 지적창조물을 창조하기 위해 지출한 로동량은 단순히 외적으로 표시되는 로동시간의 길이만 가지고 측정하기 어렵다. 그것은 지적창조물을 창조하기 위해 들인 발명자의 로동은 고도로 전문화된 높은 급의 지능로동으로서 그 량은 로동시간의 길이에 의하여 그 실제적크기가 나타나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발명자의 로동량을 측정하자면 로동량을 보다 정확히 그리고 현실적의의가 있게 보여줄수 있는 합리적인 요소를 찾아야 한다.

지적재산의 가치로 되는 발명자의 로동을 량적으로 보다 정확히 측정할수 있는 합리적인 요소는 해당 발명자의 지식소유정도와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로동시간이라고 말할수 있다.

발명자의 지식소유정도와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로동시간이 발명자의 로동을 량적으로 정확히 측정할수 있는 요소로 되는것은 그것이 단위시간에 발명자가 지출한로동량의 실제적크기를 비교적 정확히 보여줄수 있는 요소로 되기때문이다.

이것은 발명자의 지식소유정도와 활용능력이 어떤가에 따라 지적창조물의 창조를 위한 발명자의 로동결과는 달리 나타난다는것, 발명자의 지식소유정도와 활용능력에 따라 단위시간에 투하된 로동량은 달라진다는것, 현실에서 지적창조물의 가치에 대한 인정은 그 리용의 효과에 기초한다는것 등을 근거로 들어 설명할수 있다.

발명자의 지식소유정도와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로동시간을 지적재산의 가치로 되는 발명자의 로동을 량적으로 정확히 평가할수 있는 합리적인 요소로 보아야 한다는것은 결코 가치로 되는 사회적로동량을 로동시간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것을 부정하는것은 아니다.

발명자의 지식소유정도와 활용능력 등에 기초하여 계산평가한 로동시간을 지적재산의 가치인 발명자의 로동량을 평가하는 기초로 삼는 경우 문제로 되는것은 지식소유정도와 활용능력을 어떤 지표에 의하여 평가하겠는가 하는것이다. 리론적으로 가능한것은 학력과 학위학직, 사업년한과 사업성과 등이라고 볼수 있다.

이와 같이 대외경제거래관계에서 지적재산의 가치를 무엇에 기초하여 평가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지적재산이 일정한 활동에 리용되는 소유가 구분된 지적창조물이라는것 그 리고 지적재산의 가치는 지적재산의 창조에 들인 로동이며 그 량은 지적재산으로 되는 지적창조물을 창조한 발명자의 지식소유정도와 활용능력에 의하여 조절평가된 로동시간 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현시기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평가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지적재산의 가치크기를 정확히 계산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해결하는것이다.

지적재산의 가치크기를 계산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해결한다는것은 발명자가 지적재 산으로 되는 해당 지적창조물의 창조에 들인 로동량의 크기를 계산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낸다는것이다.

지적재산의 가치크기를 계산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해결은 지적재산의 가치크기를 계 산평가할수 있는 지표설정과 계산방법의 확립을 내용으로 한다.

오늘까지 지적재산의 가치계산평가방법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적재산의 상업적거래를 위한 가격계산방법연구가 중심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지난 시기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문제 와 관련하여 연구한 론문들은 주로 기술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상품의 가격 제정문제를 취급하였다.

《지적소유권의 세계》(중앙파학기술통보사 2009년)에서는 지적재산의 가치문제를 지적소유권의 가치문제로 한정시켜 지적재산의 중요한 대상으로 되는 특허와 저작권, 쏘프트웨어의 가치평가문제를 제기하고 해설하였다. 도서는 《제5장 지적소유권의 가치》(129 폐지)에서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하여 끊임없이 창조되고 축적되는 경험과 지식 등 지적재부는 지적재산으로서 지적소유권이라는 법률적인 보호를 받아 그자체가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된다. 따라서 지적소유권으로 보호되는 지적창조물은 생산물로서 경제적가치를 가지며 …》라고 한마디로 지적소유권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지적소유권의 가치크기계산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례로 보아 기술사용료는 보통 계약기간에 생산판매액에서 얻은 리윤총액의 25%로 설정한것이 많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리윤의 20~30%범위에 해당된다. 일반상품거래와 달리 특허기술허가무역에서 가격을 정확히 결정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것은 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대상기술 그자체의 가치와 그것이생산류통분야에 도입리용된 후 나타나게 되는 기술경제적효과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적지 않을뿐아니라 주요하게는 가격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이 적지 않다는 사정과 관련된다.》라고 사용료계산문제로 해설하였다.

《지적소유권의 세계》에서는 저작권가치에 대한 계산문제도 《저작권료는 특허사용료

와 달리 발행부수에 따라 계산할수 있기때문에 계산이 명백하다. 일반적으로 도서인 경우는 출판사가 정한 값의 10%를 정하고있다. …원래 저작권료는 법률적으로 사용자가 권리자에게 지불하는것이지만 이 제도(보상금제도)하에서는 제작자가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고 있다.》라고 저작권료의 계산문제로 해설하고 쏘프트웨어가치계산문제도《일반적으로 공업생산물의 가격은 제조비용, 판매, 관리비, 리익몫 등을 고려하여 그 합계를 가격으로 정하지만 쏘프트웨어의 경우 그 착상을 복제할 때의 제조비용은 대단히 작다. 실지 쏘프트웨어제품의 료금은 제조비용보다 개발비용(자료조사, 분석, 설계, 개발, 시험, 보호)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가격제정문제로 해설하였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지난 시기 연구성과내용들을 보면 지적재산의 가치평가계산문제를 지적재산으로 되는 지적창조물의 가격제정방법에 관한 문제로보고 가격제정방법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문제는 지적재산의 가격제정문제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문제는 그 가격제정문제를 옳바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기초원리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국제기술무역에서 기술상품의 가격이 해당 기술상품의 가치가 평가된 다음 그에 기초하여 여러 조건들을 타산하여 거래가격을 합의제정하는것을 보고도 잘 알수있다.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문제는 그 가격제정문제와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서로 불가분리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지적재산의 가격제정문제를 옳바로 해결하자고 하여도 반드시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문제가 선차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지난 시기 연구성과들은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의 설정과 계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와 함께 지난 시기 연구성과들은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설정과 계산방법을 해명하는데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점을 시사해주고있다.

그것은 첫째로,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방법문제는 지적재산의 가격제정문제와의 련관속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것이며 둘째로, 지적재산의 가치평가에서 해당 지적재산의 연구개발비용만이 아니라 지적재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기타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서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지표는 해당 지적재산의 가치크기를 정량적으로 정확히 계산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지표는 연구개발비용과 지적재산의 종류, 지적재산의 리용범위, 지적재산의 리용효과 등으로 설정할수 있다. 그것은 지적재산의 가치크기를 나타내는 발명자의 로동량이 연구개발비용과 함께 발명자의 지식소유정도와 그 활용능력 등에 의해서도 달라지기때문이다.

실천에서 연구개발비는 그자체로 명확히 나타나지만 발명자의 지식소유정도와 그활용능력 등에 의한 로동량은 창조된 지적창조물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지적 재산의 가치평가지표를 연구개발비용과 리용범위, 리용효과 등으로 설정하여야 그 창조에들인 로동량의 실제적인 크기를 옳바로 계산평가하여 지적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수 있다.

연구개발비용은 지적재산으로 되는 해당 지적창조물의 연구개발비용으로서 설비비,

원료 및 자재비, 자료비, 건물비, 등록 및 보호비 등 모든 직접비와 간접비를 내용으로 한다. 지적재산의 종류는 해당 지적재산이 어떤 기술분야의 지적창조물이며 기술적수준이 어떤 수준에 있는 지적창조물인가를 내용으로 한다. 지적재산의 리용범위는 해당 지적재 산의 기술적특성으로 하여 리용가능한 분야와 제품의 종류를 내용으로 한다. 지적재산의 리용효과는 해당 지적재산의 리용으로 하여 얻을수 있는 기술적 및 경제적효과를 내용으로 로 한다.

지적재산의 가치평가지표를 이와 같이 설정하는 경우 가치평가를 위한 계산에서 일정한 난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그것은 지적재산의 리용범위와 리용효과를 어떻게 정확히계산하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실에서 꼭같은 기술경제적특성을 가진 지적재산이 없으며새로운 지적재산인 경우 그 실제적인 가치는 직접적인 리용과정을 통하여서만 정확히 평가할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우와 같은 지표들에 의하여 지적재산의 가치크기를 계산평가할 때 어려운 경우가 있을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적재산의 가치크기를 용도가 같은 다른 지적재산의 가치와 대비하여 평가하는것이 효과적이다. 대외경제거래에서 지적재산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그 크기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인 도입리용의 효과에 의거하게 된다는 사정은 용도가 같은 다른 지적재산의 가치에 의해서도 해당 지적재산의 가치크기를 계산평가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리므로 대외경제거래에서는 용도가 같은 지적재산의 가치를 해당 지적재산의 가치 평가를 위한 보충적인 지표로 선택리용할수도 있다.

지적재산의 가치크기를 정확히 계산평가하기 위하여서는 평가지표가 설정된 다음 그에 기초하여 가치크기를 종합적으로 계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적재산의 가치크기를 종합적으로 계산할수 있는 옳은 방법을 찾아내자면 지적재산의 리용범위와 리용효과와 같은 현물적으로 직접 나타나지 않아 량적크기를 명확히 확정할수 없는 지표값들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계산방법을 찾아내야하다.

지적재산의 가치평가지표를 연구개발비용과 리용범위, 리용효과로 보고 가치평가계산을 진행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용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연구개발비용이 발명자가지적재산의 창조를 위해 지출한 현물량으로 명백하게 나타나기때문이다. 때문에 문제로되는것은 지적재산의 리용범위와 리용효과에 대한 계산평가이다.

지적재산의 리용범위와 리용효과에 대한 계산평가방법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데서 기초로 할수 있는 문제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지적재산의 리용범위와 리용효과는 해당 지 적재산의 기술적특성과 성능에 의해 규제된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지적재산이라 도 그것을 대신하는 다른 지적재산이 존재한다는것과 지적재산의 리용범위와 리용효과라 는 지표를 설정하고 계산하는 목적이 발명자의 로력비를 바로 평가하기 위한것이라는것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을 기초로 하여 지적재산의 가치평가계산방법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지적재산의 가치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설정된 매개 평가지표들의 값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호상련관속에서 존재하고 의의를 나타낸다는것이다. 연구개발비용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연구개발

비용의 크기를 결정하는 비용항목들은 개발하려는 기술의 종류와 특성, 개발목적 등에 의하여 달리 설정된다. 뿐만아니라 개발하려는 기술의 종류와 특성, 개발목적 등은 지적재산의 리용범위와 리용효과와 같은 평가지표들의 중요한 분석요소들이다. 이것은 매개 평가지표들의 값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호상련관속에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평가에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을 잘 알고 과학적인 원리와 가치평가방법을 완성하여 지적제품류통사업을 개선하고 지식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지적재산, 가치평가